

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456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2022. 1. .
제안자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에 따라 「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)에 의거 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위탁시설 현황

- 위탁시설 : 평창군다함께돌봄센터(평창2호점, 대화3호점)
- 위치 및 규모
 - 평창2호점 : 평창읍 노람들길 57 / 342.75m²
 - 대화3호점 : 대화면 대화중앙로 99 / 70m²
- 운영예산 : 218백만원(개소당 109백만원)
- 주요시설 : 놀이공간(활동실), 사무공간, 조리공간, 화장실 등

3. 위탁개요

- 위탁단체
 - 평창2호점 : 비영리민간단체 「극락사」
 - 대화3호점 : 비영리법인 「강원도사회서비스원」
- 위탁기간 : 2022. 04. 01. ~ 2027. 03. 31.(5년)

- 위탁내용 :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- 선정방법 : 지정위탁
 - 평창2호점 : 비영리민간단체 「극락사」 ⇨ 부지 및 건물 무상임대
 - 대화3호점 : 비영리법인 「강원도사회서비스원」 ⇨ 돌봄서비스 전문기관
-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: '22. 2월 ~ 3월

4. 기대효과

- 초등 돌봄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,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

5.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취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